작성방법 ※ 이 서식은 ｢외국환거래법｣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모든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됩니다 (공동투자자도 모두 제출대상이 됩니다).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청산(폐업)한 해외현지법인(역외금융회사 포함)에 대하여 관련항목을 작성합니다. 1. ‘Ⅰ.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현황(총계)’의 해당란은 ｢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의 경우와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. 2. ‘1. 해외현지법인의 기본사항’의 구분에 따라 ‘󰊊󰊒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’과 ‘󰊊󰊙 자회사명’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. 구 분 󰊊󰊒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󰊊󰊙 자회사명 “국내모법인의 자회사”에 “√” 표시한 경우 (1) 국내 모법인을 먼저 적고 (2)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지분의 10% 이상을 소유한 국내외 주주만 적으며 (3) 나머지는 “소액주주 소계”로 적음 해외현지법인이 10% 이상 직접 소유한 자회사(국내 모법인의 손회사) 명을 적음 “국내모법인의 손회사 이하”에 “√” 표시한 경우 (1) 국내 모법인의 자회사 이하를 먼저 적고 (2)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% 이상을 소유한 국내외 주주만 적으며 (3) 나머지는 “소액주주 소계”로 적음 해외현지법인이 10% 이상 직접소유한 자회사(국내 모법인의 증손회사 이하) 명을 적음 3. ⑪ 해외현지법인명과 󰊉󰊘 해외현지법인 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(full name)으로 적습니다. 4. ⑫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｢외국환거래법｣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투자 등에 대하여 국내 모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｢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｣(9자리)를 적어야 합니다.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(법인세과)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(첨부서류 포함)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 5. ⑭ 투자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｢외국환거래규정｣ 제9-5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신고 이후 실제로 외화증권을 취득한 날 또는 실제투자(송금)일을 입력하며, 정확한 투자월일을 모를 경우 해당 연도의 초일(예：2012.01.01.)을 적습니다. 6. ⑮ 현지납세자번호는 해외현지법인 소재지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현지법인의 납세자번호(Tax Identification Number)를 적습니다. 7. ⑰ 업종은 국세청 기준경비율(단순경비율)에 따른 대분류, 업종코드는 기준경비율코드(숫자6자리)를 적습니다. (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→조회･계산 →기준경비율･표준소득율을 참고합니다) 8. ⑱ 직원 수는 모법인이 파견한 직원 수와 현지채용 직원 수를 합하여 적고, 모법인파견 직원 수는 별도로 ( )내에 적습니다. 9. ㉑ 출자금액과 ㉕ 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청산(지분양도)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적습니다. 다만, ㉑ 출자금액은 투자(증액투자 포함) 당시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(裁定)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이후의 외환차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. 10. ㉓･ ㉜ 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(예：15.3)까지 적습니다. 11. ㉔ 배당금수입과 ㉖ 대부수입이자는 ㉑ 출자금액과 ㉕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사업연도 중에 결의된 모법인 배당금 및 발생된 이자를 적습니다. 12. ｢대부투자 명세｣는 모법인이 ｢외국환거래법 시행령｣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 다만, 모법인 이외의 현지법인주주는 적지 않습니다. 13. 현지법인을 청산(지분양도)한 경우 ㉟ 청산유형에 청산, 지분양도, 현지법인폐업, 투자자폐업, 합병, 대여금회수 (대부투자의 경우) 등의 사유를 적고, ㊱ 회수금액에는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적습니다. 14.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㉞ 청산(지분양도)일에 원래의 투자신고일을 적고, ㉟ 청산유형에 “투자 미실행”을 적습니다. 15. ㊲ 주거래은행 신고 여부는 외국환은행에 ｢외국환거래규정｣ 제9-6조에 따라 청산 관련 보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적습니다. 16.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 수가 둘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.